
효담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준비서류

- ①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3.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5. 급여비용/이용료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 ③ 경감대상자는 6% 혹은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발생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도액과 수가변동으로 변경되는 내용,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및 제 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 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 일정기준 이하인 자	6%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일정기준 이하인 자	9%

7. 급여비용 청구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②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는 없다.
-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목적
- ② 계약기간
- ③ 급여범위
- ④ 급여이용 및 제공
- ⑤ 계약자 의무
- ⑥ 계약해지 조건 , 요건
- ⑦ 계약의 해지
- ⑧ 이용료 납부
- ⑨ 재계약
- ⑩ 건강관리
- ⑪ 개인정보 및 보호의무
- ⑫ 기록 및 공개
- ⑬ 배상책임 등 기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4.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원의 의무

- 1.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한다
- 3. 신원인수인의 신병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4.서비스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8.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이용 시 문제가 있을시
6.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